



튼튼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

‘노인장기요양보험’

인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!

+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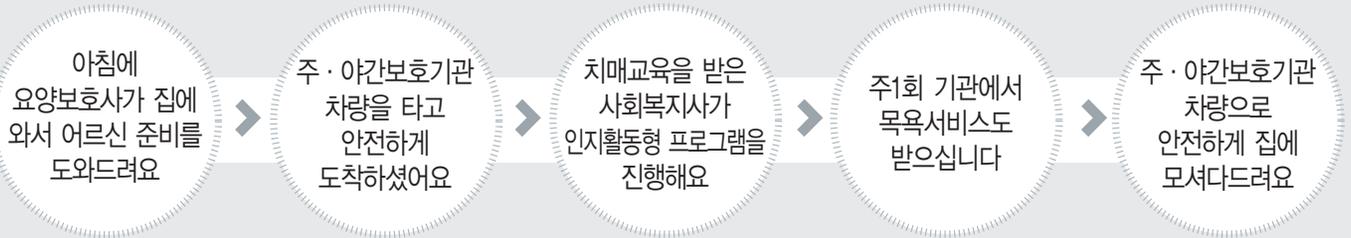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께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어르신이 행복한 사회



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최근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신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?



+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

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
65세 이상 노인과
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

※노인성질환 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

+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

우편, 방문(국민건강보험공단), 팩스,
인터넷 www.longtermcare.or.kr

문의전화 ☎ 1577-1000

+ 장기요양 인정 절차

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
국민건강보험공단에
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
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


장기요양
인정신청

대상 :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
노인성질환을 가진 분
방법 : 우편, 방문(국민건강보험공단), 팩스 및
인터넷 www.longtermcare.or.kr



인정조사



의사소견서
제출



장기요양
등급판정



장기요양
인정서 송부



장기요양
급여 이용

+ 장기요양 급여종류

시설급여

- ⊕ 노인요양시설 (입소정원 10명 이상)
- 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9명 이하)



재가급여

- ⊕ 방문요양
- ⊕ 방문간호
- ⊕ 방문목욕
- ⊕ 단기보호
- ⊕ 주·야간보호
- ⊕ 복지용구 (구입·대여)



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할까요?



노인요양시설

재활과 돌봄중심의 시설로서 비교적 심신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속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요양병원

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한 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대상이 아닌 의료시설